

중경기업 확인서 안내









중견기업 확인서란?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명시된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며 오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현황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활용하는 중견기업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	발급건수	발급율 (전체 중견기업수)	
2012	71	2.6%(2,743)	
2013	631	18.3%[3,436]	
2014	860	22.3%[3,864]	
2015	979	32.9%(2,979)	
2016	1,177	33.1%(3,558)	
2017 1,419		35.4%[4,014]	

※ 중견기업수 출처

2012~2016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7 :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중견기업 확인서 활용사례



주요 발급사유(2017년도 기준)

순위	사유	발급수	비중
1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및 갱신	310	22%
2	정책금융 신청	104	7%
3	국책과제 참여	69	5%
4	지원사업 참여	68	5%
5	거래처제출	57	4%

[※] 기타사유로는 병역특례, 입찰참여, 특허료감면, 관세감면 등이 있음

중견기업 주요 활용제도

|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및 갱신 |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문의 :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 1379)

2018 KDB Global Challengers 200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견기업과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예비중견기업*)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육성프로그램
- 신청기간 : 2018. 3. 12 ~ 5. 4
- 문의 :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u>002-787-6926</u>, 6927)
 - * 추천문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4)

| 특허료 감면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료와 심사청구료 30%감면 혜택 *상세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참고
- 문의: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 병역지정업체 선정 |

- 입영대상자(현역·보충역)가 국가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병역지정 업체에서 제조, 생산 등 인력으로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으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8. 6. 1 ~ 6. 30 • 문의 : 병무청 (◈ 1588-9090)

매출채권보험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신청요건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상생결제제도 |

-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 1670-0834)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확인서 발급 프로세스〉

*모든 절차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통해 진행됩니다.

STEP1	회원가입	담당자 본인인증 후 기업회원으로 가입
STEP2	확인서신청	직전 3개년도 감사보고서와 주주명부 제출 (30%이상의 지분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 추가 후 동일서류 제출)
STEP3	검토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검토 완료 (17년 업무일 기준 평균 5일 소요)
STEP4	발급	마이페이지 → 확인서신청내역에서 출력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